윤리경영 실천지침

1. 총칙

1.1 목적

본 윤리경영 실천지침(이하 "실천지침")은 SK스퀘어(이하 '회사'라 함)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1.2 용어의 정의

- 1.2.1 구성원: 회사에 재직중인 임·직원(계약직, 파견직, 기타 비정규직원 포함)
- 1.2.2 금품: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, 복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- 1.2.3 향응·접대: 술자리, 골프, 공연, 국내외 관광 및 출장, 사행성 오락 등
- 1.2.4 편의: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
- 1.2.5 금전거래: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도박 등
- 1.2.6 친·인척: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
- 1.2.7 이해관계자: 구성원의 업무 관련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업체, 협력업체, 컨설팅업체 등 사내 외 모든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단체
- 1.2.8 자회사: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자회사 중 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최고경영진 선임과 관련한 권한 보유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회사에 한정

1.3 실천지침의 구성

본 실천지침은 본인(나), 회사, 고객, Biz. Partner(이하 BP), 구성원 상호에 대한 실천지침의 준수 및 운영·절차를 포함하고 있다.

1.4 적용범위

본 실천지침은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

2. 나를 위한 윤리 실천

2.1 [성실한 업무수행]

2.1.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보고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전결규정을 준수하고,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2.1.2 구성원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, 리더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허위/과장/왜곡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전달하지 않아야 하며, 업무 소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2.1.3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, 겸업, 부업 등을 하지 않는다. 단, 회사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2.2 [이해상충의 해결]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상충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음은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관계의 예시이나, 모든 이해상충관계를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.
 - 가. 행위가 금지되는 이해상충의 예시
 - 1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
 - 회사가 투자 또는 매수, 임차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
 - 회사정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, 취업 추천 등을 보장하는 행위
 - 2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와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도박 등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
 - 3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로부터 과도한 보상을 받는 행위
 - 나.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이해상충의 예시
 - 1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,BP 및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
 - 2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
 - 3)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BP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
 - 다. 기타 불가피하게 구성원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를 형성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 구성원의 가족 및 친·인척, 지인이 회사나 BP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2.3 [법규 및 규정 준수] 구성원은 경영활동, Compliance 의무, 안전·환경 등에 대한 모든 관련 사규,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고, 부당한 공동행위,

부당한 내부거래, 돈세탁,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3. 구성원에 대한 윤리 실천

3.1 [상호 존중]

- 3.1.1 구성원은 폭언, 폭행 등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,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괴롭힘 행위 또는 이로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3.1.2 구성원은 음주/흡연 강권, 직위·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등 구성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.
- 3.1.3 구성원은 성별, 학연·지연, 결혼·임신,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, 상하간 또는 동료 평가 시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.

3.2 [건전한 관계형성]

3.2.1 구성원은 부적절한 금전거래, 업무와 무관한 사적 부탁이나 지시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,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.

4. 회사에 대한 윤리실천

4.1 [회사 자산 및 정보보호]

- 4.1.1 구성원은 회사의 유·무형자산 및 기업비밀 등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 - 가. 구성원은 회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,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 - 나. 구성원은 회사의 상표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 - 다.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라.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기업비밀 등을 사전 승인 없이 내·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정보보호, IT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회사의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- 마. 구성원은 소셜 미디어 등에 회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거나 부정적 인식을 유발시키는 행위, 회사의 경영정보 및 기업비밀 등을 누설 또는

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- 4.1.2 구성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
- 4.2 [예산 사용] 구성원은 업무 목적 外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비용을 사용하지 않고, 경비 집행 및 정산 시 허위 증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4.3 [정치적 중립] 구성원은 모든 형태의 자선적 기부 및 후원을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, 정치적 목적의 직간접적 기부 및 후원을 하지 않는다.

5. 고객을 위한 윤리실천

- 5.1 [고객가치 제고] 구성원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고, 고객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5.2 [고객정보 보호] 구성원은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, 업무 수행에 있어 고객정보의 수집·관리·사용 시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.

6. Biz. Partner와의 윤리실천

- 6.1 [공정한 기회 제공] 구성원은 담당 업무 관련 BP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는 요구 또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.
 - 6.1.1 구성원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BP에게 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.

가. 부정청탁 행위 예시

- 채용,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
-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
-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
-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

- 6.2 [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] 구성원은 BP에게 폭언/폭력/성희롱 등 Biz Manner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, BP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향응·접대 및 금품, 선물, 개인적 편의를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.
- 6.3 [BP정보 보호] 구성원은 BP와의 거래 전/후에 취득한 BP관련 정보를 목적 外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7. 실천지침의 준수 및 운영·절차

7.1 실천지침의 준수

- 7.1.1 모든 구성원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,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·상담하여 그해석에 따라 행동한다.
- 7.1.2 조직의 리더는 소속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.
- 7.1.3 구성원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,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7.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실천가이드 운영

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실천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'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절차규정' 및 '윤리경영실천가이드'를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7.3 윤리경영 상담 및 문의

실천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윤리경영 실천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 채널을 운영한다.

7.4 상담·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

- 7.4.1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구성원과 관련된 윤리경영 관련 상담·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- 가. 상담·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 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.
 - 나.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및 징계규정 등 회사의 제반

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
- 7.4.2 BP 관련 상담·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 - 가.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,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물량 제한,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나.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영향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BP 및 피신고자 등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.
- 7.4.3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윤리규범 관련 상담·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한다.
- 7.4.4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 상담·신고자가 상담·신고 철회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- 가. 상담/신고된 사안이 취업규칙 위반, 회사의 유무형 손실 발생, 법·계약 위반 등 심각한 윤리규범 위반인 경우,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이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철회요청과 관계없이 사실확인 및 조사를 진행한다.
- 나. 상담/신고된 사안이 '3.1항 상호존중' 위반과 '3.2항 건전한 관계형성'을 저해하는 사안인 경우 위 "가"를 고려하여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.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윤리규범 관련 상담·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한다.

7.5 상담·신고자 보호

- 7.5.1 회사는 상담·신고자, 조사협조자의 신분 및 상담·신고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, 상담·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- 7.5.2 상담·신고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7.5.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상담·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, 인사규정에 의거 조치한다.
 - 가. 면책이 가능한 예외조항
 -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
 - 무고 및 음해, 심각한 부정사건, 회사 기밀유출 및 자료 위변조, 언론 보도 사항 등
- 7.5.4 상담·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그 사실을 상담·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.
- 7.5.5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감사인은 감사인 수행지침을 준수하여 독립적이고

객관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제보자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

7.6 금품·선물 수취 시 처리 절차

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/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, 그 경과를 '윤리경영 담당부서'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가.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.
- 나. 반송이 곤란하거나 부패, 변질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
 - 회사 명의로 결연단체 등에 기부/기증하고 해당 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.
 - 승진, 이동 등과 관련된 난·화분은 사내 조경 목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결과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.

<부 칙>

1. 시행일

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<부 칙>

1. 시행일

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부 칙>

1. 시행일

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